

서울특별시의회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09
----------	------

제안년월일 : 2016. 9. 6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주문

- 서울시의회는 노후하수관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와,
-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단계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1을 개정하여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5년간(2011~2015)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건수는 포트홀을 포함하여 3,62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7%인 2,806건이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2,720km 중 1,393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기준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관로는 절반이 넘는 총 775km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모두 정비하는데 약 1조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시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범정부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편성된 국비(예비비)500억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목적으로 편성된 국비 500억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국회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부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5. 첨부 : 「서울특별시의회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 최근 5년간(2011~2015)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건수는 3,62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7%인 2,806건이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발밑에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15년 7월~'16년 4월까지 도로함몰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2,720km 중 1,393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관로는 절반이 넘는 총 775km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km(조사물량 1,393km의 약 16%)로 밝혀졌습니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서울시내 그 어느 곳도 도로함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시급히 정비하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나 인명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보수비용이 긴급보수(217km)에 2,917억원, 일반보수(558km)에 7,489억원으로 총 1조 400억원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포함하면 총 2조 300억원에 이르러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이에 환경부도 이를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올해 국비(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저희 서울시의회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법정보조금 지원기준 고수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하수도법」(제 63조 국고보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노후하수관로에 의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24시간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노후하수관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와,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단계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1을 개정하여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9.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붙임] 1. 서울시 노후하수관로(30년 이상) 조사 현황
2. 노후 하수관로 조사계획
3. 노후하수관로 내부조사(1,393km) 결과 소요사업비

[붙임 1] 서울시 노후하수관로(30년 이상) 조사 현황

년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건수	3,626	572	691	850	779	734
1. 하수도	2,806 (77%)	412 (72%)	612 (89%)	753 (89%)	525 (67%)	504 (69%)
2. 상수도	70	11	14	8	21	16
3. 기타	750	149	65	89	233	214

(서울시 자료)

[붙임 2] 노후 하수관로 조사계획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로연장(km)	2,720	1,393	284	527	516
예산(억 원)	236	128	25	42	41

(서울시 자료)

[붙임 3] 노후하수관로 내부조사(1,393km) 결과 소요사업비

구 분		환경부기준(424,349개소)			서울시기준 (36,914개소)
		소 계	긴급보수	일반보수	
정비물량 (km)	계	1,514	424	1,090	217
	1차 조사	775	217	558	111
	2차 조사	739	207	532	106
공사비 (억 원)	계	20,318	5,695	14,623	2,911
	1차 조사	10,406	2,917	7,489	1,491
	2차 조사	9,912	2,778	7,134	1,420

※ 전체 조사 연장 : 2,720km(1차 1,393km, 2차 1,327km) 2차 조사 정비물량 및 공사비는 추정치임

(서울시 자료)